

의안번호	2208526
의 퇴 인	백선희 의원
회 답 일	2025.3.10.
추계번호	25C1115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6조의2(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)	(제1항)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2	안 제29조의9(아동관련기관 취업자의 심리검사 등)	(제2항)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(제3항)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심리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6조의2(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9조의9(아동관련기관 취업자의 심리검사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, 해당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법은 국가기관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아동관련기관에서 선택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아동관련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받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

가.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(안 제26조의2)

- 개정안은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에 따라 해당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,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
 - － 관련 유사사업으로 정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을 통하여 아동복지 현장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(2024년 예산 기준 20억 7,400만원)
- 개정안은 아동관련기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정부가 관련 교육 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나 추가재정소요 추계 시 필요한 정보, 즉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 수강자 현황(구체적으로 설정된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수, 종사자 대상범위 등), 기존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신청하여 수강한 대상에 대한 정보, 해당 교육의 횟수 및 시간 등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추계가 곤란함

-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경우 교육의 방법, 사업의 확대에 따른 증액된 아동학대 예방교육 운영비 및 인건비, 관련 유사사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는 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

나. 아동관련기관 취업자의 심리검사 등(안 제29조의9)

- 개정안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의무화하는 경우 신규 사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2019년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기관 관련 사업(2024년 예산 기준 17억 4,300만원)을 운영하고 있으나, 아동관련기관 종사자가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사업은 실시하고 있지 않음
- 개정안에 따라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를 의무화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의 수, 심리검사의 구성 및 내용,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아야 하는 횟수 등 심리검사 관련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함
 - 개정안은 심리검사의 항목, 절차, 실시 방법, 시기·주기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, 현 시점에서는 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nabo.go.kr